

●여성가족부령 제222호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25년 09월 30일

여성가족부장관 인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호 마목을 사목으로 하며, 같은 호에 마목 및 바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라. 소재지(「도로명주소법」 제2조제7호에 따른 도로명주소로 한다)

마. 전화번호

바.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(인터넷 홈페이지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

제7조제3항 전단 중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7항”을 “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8항”으로 한다.
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관한 적용례)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에 공시하는 것부터 적용한다.

제3조(교육 이수에 관한 경과조치)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별표 3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.

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표 3]

교육내용 · 교육방법 등(제16조제2항 관련)

교육과목	교육내용	시간	방법
직업윤리 및 인권 보호	- 결혼중개업의 사회적 책임 및 직업윤리 - 인권침해 사례 및 인권 보호·구제	2	집합교육
결혼중개업 관련 소비자 보호 방안	- 소비자보호 관계 법령 해설 - 소비자 보호 및 구제 방안(표준약관 준수, 유형별 피해사례 및 분쟁사례, 구제절차 등을 포함한다)	1	집합교육
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	- 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해설 - 입국, 체류 등 관련 법령 해설 - 상담 이론 및 상담 실무 - 그 밖에 결혼중개업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	3	집합교육
다문화사회에 대한 이해	- 국제결혼 당사국의 결혼 관련 법규 및 문화 - 다양한 문화의 존중과 이해를 위한 기본 소양	1	집합교육

비고: 집합교육은 강의를 원칙으로 하되, 필요한 경우 실습교육을 병행할 수 있다.

■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7호의2서식]

□ ☐ 국내결혼중개업체 □ 공시
□ ☐ 국제결혼중개업체

「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.

이
이
이

〇〇특별자치시장·시장·군수·구청장

[illegible]

※ 처분내용은 “영업정지 ○월 ○일”, “과태료 금액 ○○원”으로 적습니다.

◇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국내결혼중개업체 및 국제결혼중개업체의 공시사항에 전화번호,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을 추가하고, 국제결혼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과 관련하여 결혼중개업 제도 및 실무의 교육 시간을 종전의 2시간에서 3시간으로 확대하며 해당 교육내용으로 입국, 체류 등 관련 법령의 해설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 여성가족부 제공 >